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차 변경계획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경영한 분수국유림을 산림청에 반환함에 따라 지급받은 입목대금으로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하고자 도유림 재산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등에 필요한 토지 및 임업시험 연구 목적의 포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고
- 주거생활권역 어린이 공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제공,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 및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에서 추진중인 주민쉼터조성 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3. 주요내용

#### 가. 재산의 취득 :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 위 치 :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3-1 등 16필지
- 매입규모 : 2,246,583m<sup>2</sup> (세부내역 : 붙임)
- 사업기간 : 2009.10월 ~ 12월
- 사 업 비 : 2,676백만원

#### 나. 재산의 처분 :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의외 1필지
- 매각규모 : 1,984m<sup>2</sup>(세부내역 : 붙임)
- 매각시기 : 2009.10월~12월
- 매 수 자 : 청주시

### 4. 검토의견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2,246,583m<sup>2</sup>를 매입하고, 청주시에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1,984m<sup>2</sup>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 가.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임야 확대 조성은 우리 도가 분수국유림을 경영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으로 도유림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임.

분수국유림은 도내 27필지 10,044ha를 경영하여 97억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았으며,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503.4ha의 임야를 67억원에 매입하였음.

임야 매입은 기존의 도유림과 인접하여 집단화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10ha이상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주와 감정가격에 매입하기로 협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됨.

이번에 매입하는 임야는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산 3-1번지 109.8ha,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산65-1번지 39.6ha,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3-1 등 14필지 75.1ha로 기존 도유림의 인근지역에 있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야와 선림경영이 가능한 10ha이상의 임야로서 적정한 도유림 조성이라고 판단됨.

#### 나.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도유재산 매각

청주시에 매각하려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93번지의 1필지 1,984㎡의 도유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주민쉼터 조성사업 지역 임.

청주시에 추진하는 주민쉼터조성사업은 어린이 공원이 없는 주거생활권역에 주민들의 휴식할 수 있는 주민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주민쉼터 조성지역으로 청주시에 매각하려 것으로, 재산가액은 개발공시지가 1,150백만원 임.

재산매각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대체재산 취득 등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참고자료

-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추진상황 -

□ 분수국유림이란

- 정부의 조림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국유림에 조림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육림등 산림경영한 후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상 생육 입목에 대하여 국가와 수익 분배 하는 제도

□ 분수국유림 현황

- 면적 : 27필지 10,044ha(제천 6,858 피산 2,552 단양 634)
  - 국립공원 지역 7,424ha로 74%
- 설정기간 : '79 ~ 2010('58 조림대부 → '79 분수림 계약)

□ 수익분배 추진

- '02 ~ '05까지 추진 : 수익분배 수익금 97억원
  - ※ 수익분배 수익금 : 도유림 확대조성 임야매입에 사용코자 적립금으로 별도 관리
    - 회계과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개설 정기 예금(농협)

□ 수익분배 수익금의 도유림 매입 법적 근거

-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2항)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공유재산관리조례(제44조 제2항)에 “분수국유림의 수익분배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 할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 관리하여 사용” 토록 규정  
⇒ 분수국유림의 수익분배후 국유임야를 산림청에 반환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도유토지 대체조성 도유 재산 증식